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9215 장비대금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이옥자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5. 11. 10.

판 결 선 고 2015. 12. 8.

주 문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710,000원, 선정자 C에게 418,000원, 선정자 D에게 1,210,000원, 선정자 E에게 605,000원, 선정자 F에게 418,000원, 선정자 G에게 605,000원, 선정자 H에게 3,630,000원, 선정자 I에게 7,795,700원, 선정자 J에게 3,465,000원, 선정자 K에게 605,000원, 선정자 L에게 770,000원, 선정자 M에게 1,980,000원, 선정자 N에게 495,000원, 선정자 O에게 1,21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고 있다.
- 2)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의 배우자이다.

나. 미지급 공사장비대금 및 피고의 연대보증

- 1) 원고들은 ▲▲▲▲▲ 공사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부터 2014. 11. 까지 ○○○수변공원 조성공사 및 △△△△△라이즈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장비를 대여하였다.
- 2) ▲▲▲▲ 원고들에게 총 27,916,700원의 공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5. 5. 19. ▲▲▲▲ ○로부터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을 2015. 5. 30. 및 2015. 6. 30. 2회로 나누어 전액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교부받 았다(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고 한다).
- 3) 이 사건 지급각서에는 2015. 5. 20.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위 지급각서의 하단에 피고의 주소, 생년월일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장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장비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 공사장비 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각서 작성시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여부

먼저 피고가 ▲▲▲▲의 공사장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주채무자인 ▲▲▲▲의 대표이사인 P의 배우자로서 위 회사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지급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참조), 이 사건 지급각서에는 작성일 바로 다음날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지급각서의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들은 ▲▲▲▲의 사무실로 찾아가 이 사건 지급각서를 작성·교부받을 때 피고도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급각서의 피고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각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해 현출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따라서 위 지급 각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직접 공사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지급각서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
▲▲ ●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장비대금(원고들에 대한 각각의 공사장비대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과 같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

별지생략